

영국사례 1

정당한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하는 것과 타인의 도움 등을 통해 획득하는 것 간에는 구별이 필요하며, 정당한 허가 없이 취득한 정보라 하더라도 불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그 정보에 기초한 보도는 허용된다.

- 불만제기인 : St. Andrew's Healthcare
- 적용된 조항 : 제1조(정확성), 제10조(위장취재)
- 언론사 : 『The Echo』, 『Daily Gazette』

형구내용

St. Andrew's Healthcare는 “우리는 왜 사전 경고를 받지 못하였는가?”라는 제하의 『The Echo』와 『Daily Gazette』의 2009년 9월 30일 자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반출된 취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와 제10조(위장취재)를 위반하였다며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불만을 제기한 St. Andrew's Healthcare는 정신치료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선단체이다.

불만제기 대상 기사는 정신치료수용시설(이하, ‘시설’)에서 무단이탈한 적이 있는 한 환자(이 환자는 시설의 감독하에 이뤄진 쇼핑 일정 중 중격을 감춘 뒤, 8일이 경과한 후 발견되어 다시 시설에 수용되었던 전력이 있다)에 대한 경찰 기밀문서와 의료기록에 ‘지능적이고 통제불능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무단이탈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성폭행 전과자’라고 묘사되어 있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언론사들은 또 이 환자가 무단이탈한 시점에 ‘경찰은 무단이탈을 한 환자가 일반 대중에게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불만제기기관은 무단이탈 환자에 관한 보도가 환자 관련 서류의 불법 반출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이 무단이탈한 환자에 대한 기사를 내보낼 당시 해당 환자는 이미 시설로 복귀하여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요소가 사라진 뒤이기 때문에 신문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은 또 기사 내용 중 ‘무단이탈한 환자는 재택치료 대상자로서는 부적합하며, 재택치료 관련 적합성 판단 의견은 그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적용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불법취득한 문서 중 일부를 부정확하게 인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 측은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도 반출한 적이 없으며, 인용한 내용은 최초 사건 관련 보도 후 익명의 병원 내부 제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반박했다. 신문사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 어떠한 속임수도 없었고, 해당 기사는 무단이탈한 환자가 일반 대중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작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의 내부 제보자가 제공한 서류의 내용을 보도의 주요 근거로 삼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보도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며, 독자들은 무단 이탈한 환자의 시설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환자로 인해 초래될 수 있었던 위험성에 대한 의사와 경찰의 의견을 알 수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불만제기기관이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한 근거의 빈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호 시설의 종류와 성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기관측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실제 그 시설의 홈페이지에 이 병원은 ‘강화된 보안시설’을 갖추고 있는 환자수용시설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문사는 불만제기기관이 자신들의 주장을 신문사로 보내올 경우, 그 내용을 보도해 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결 정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평 결

문제가 된 보도의 근거가 되는 환자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신문사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바 없

으며, 정보는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획득한 것이라 인정된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정당한 허가 없이 제공되었으며 신문사는 기사를 작성하는 데 그 정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양태로 취득한 정보를 신문사가 보도 형태로 공개할 때는 불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PCC는 보도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 중대한 정보라는 점에 공감한다. 지역사회에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환자가 무단이탈한 상태로 있었으며 이후에 강제적으로 시설로 복귀하였다는 사실은 정보 취득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 환자는 여러 차례 시설을 무단이탈 한 전력이 있으며, 그 환자의 이탈은 해당 시설의 환자 수용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단지 환자가 수용시설로 다시 입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보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천강령 제10조(위장취재) 위반에 대한 불만제기는 기각한다.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와 관련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속하며, 이 내용이 독자들을 심각하게 오도하거나 관련 실천강령을 위배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PCC는 불만제기기관의 주장을 기사화하겠다는 언론사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영국사례 2

촬영된 사진의 내용이 일반 공개된 장소에서도 목격 가능한 것이라면, 개인의 부동산 내에 있는 사람을 촬영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

- 불만제기인 : 신원 미공개
- 적용된 조항 : 제1조(정확성), 제3조(사생활), 제4조

- (괴롭힘), 제10조(위장취재), 제11조(성폭력 피해자)
- 언론사 : 『The Scottish Sun』

정구내용

신원공개를 원하지 않는 한 여성은 2009년 11월 14일 자 『The Scottish Sun』이 보도한 “거짓말 한 아빠, 철창신세” 제하의 기사가 부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을 위반했으며,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실천강령 제11조(성폭력 피해자) 또한 위반하였다고 언론 불만처리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불만제기인은 또 신문사 직원이 자신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괴롭혀 실천강령 제4조(괴롭힘)과 제10조(위장취재) 또한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신문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사진을 취득하여 보도하여 제3조(사생활)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기사는 한 남성이 노무 관련 재판에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불만제기인은 그 재판에서 성폭력에 대한 배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성폭력 피해 당사자였다.

해당 신문사 기자는 재판에 앞서 불만제기인의 집을 찾아갔으나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불만제기인은 기자를 법원의 재판부와 관련된 직원으로 오인하였으며, 불만제기인은 기자와 대화하는 도중에서야 그 사람이 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기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불만제기인은 만약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말할 내용이 있으면 기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으나, 자신의 이름이 신문 지면에 인용되거나 보도 되는 것은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불만제기인은 기자와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연락하였으며 기자는 불만제기인에게 관련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불만제기인은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에는 불만제기인의 이름이 정보원으로 적시되어 있었으며, 집 현관에서 촬영된 그녀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다.

이와 관련 해당 신문사 측은 불만제기인을 접촉한 기자는 자신이 지역 법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위증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만제기인이 적극적으로 연루된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기자가 불만제기인의 집을 방문해 연락처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만제기인은 신문사를 통해 기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고,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자와 대화와 문자 메시지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신문사 측은 이렇게 이뤄진 대화를 바탕으로 불만신청인을 기사의 취재원으로 밝혔으며, 보도된 사진 역시 동의하에 현관에서 촬영하였으나, 이후 그녀의 마음이 바뀐 것이라 주장했다.

결정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평결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가 상충하는 등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PCC는 심사 과정에서 불만제기인이 언론을 대하는 데 익숙하지 못했다는 점과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또한 기자와 불만제기인 간에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실천강령 제4조는 취재 대상에 대한 물리적 괴

롭힘을 금지하는 것이며, 취재 대상인 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기자는 ‘질문, 전화, 사진촬영’ 등을 반드시 중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기자가 불만제기인을 괴롭혔다고 불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불만제기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던 불만제기인과 기자 간에는 반복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그 접촉을 통해 논란이 된 내용들이 전달되었음도 알 수 있다. PCC가 이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룬 것(불만제기인이 사진촬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은 언론사가 사진기자를 불만제기인의 집에 보낸 것이 실천강령을 위반하는 물리적 괴롭힘이었는지 하는 점이다.

PCC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실천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불만제기인은 사진기자가 온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진기자가 불만제기인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만제기인이 단순히 사진을 찍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이 곧바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금지하는 실천강령 제4조(괴롭힘)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강령 제3조(사생활)는 ‘사적인 공간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적인 장소는 ‘합리적인 예상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개인 사생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불만제기인이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PCC가 다뤄야 할 사항은 사진 촬영이 실천강령이 보호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났는지 여부이다. 문제가 된 사진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 쪽에서 있는 불만제기인을 찍은 것이지만, 개인 소유의 부동산 내에 있는 사람을 촬영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실천강령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할 수는 없

다. 이전의 유사 사건을 참조할 때 이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촬영된 사진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도 사진에 찍힌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인가 하는 점이다. PCC는 양측이 제시한 사진을 증거 자료로 볼 때 사진에 찍힌 모습은 (사적 공간을 침입한 것이 아닌) 일반 장소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판단, 사생활을 침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녀의 성명은 이미 법적 분쟁 과정을 다룬 기사에서 공개되었고, 사진이 어떤 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불만제기인의 남편이 돌아오고 난 후에야 기자의 신분을 알았다는 것이 제10조(위장취재)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서도, 불만제기인이 기자와 첫 번째 대화가 끝나갈 무렵 상대방이 법원 직원이 아닌 기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기자가 불만제기인에게 접근한 방식이 실천강령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PCC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이다. 불만제기인이 사건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이나 진술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것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불만제기인은 실제로 신문에 공식적인 인터뷰나 증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그녀는 자발적으로 기자와 수차례 대화를 나눈 것이 인정된다. 기자는 자신이 얻은 정보가 보도 금지를 전제로 획득하게 된 것이 아니었고, 인용한 부분도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곡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도 않다. 또 실천강령 제11조(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사건에 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의 판단함에 있어 제11조를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호주 사례

익명의 정보원이 제공한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언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평결번호 : No. 1454

호주신문평의회(APC)는 Blacktown 지방의회 Alan Pendleton 의원이 제기한 두 가지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했다. Pendleton 의원은 2009년 12월 2일과 12월 9일에 『Rouse Hill Times』가 보도한 두 기사가 비판하고 있는 보도 내용을 정당화할 만한 정도의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12월 2일 기사는 익명의 정보원에 근거하여 Blacktown 지방의회가 Riverstone 2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Pendleton 의원을 주된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Pendleton 의원은 이 기사가 수많은 오류와 왜곡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Riverstone 200주년 기념행사 위원회가 시민들이 제공한 행사 관련 아이디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 부분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언론담당 부서도 신문사 측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당시 ‘일언지하에 거절’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이 내용과 관련하여 Pendleton 의원이 반론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신문사가 연락을 취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사 측은 해당 기사는 Blacktown 지방의회의 언론담당부서와 실제 접촉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같은 접촉은 지방의회 언론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고 밝혔다. 신문사는 반론기회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Pendleton 의원이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PC는 불만제기된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한다. 신문사의 접촉 내용에 대해 반론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Pendleton 의원이 거절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사의 내용이 Pendleton 의원에게 부당한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익명의 정보원이 제공한 정보가 직접적으로 Pendleton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론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다.

이 사건 이후 신문사는 자사의 신용도를 위해 지역의회 의원으로부터 의견 청취에 관한 회사 내규를 바꾸었으며, 새로운 규정은 보도에서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자는 반드시 보도 전에 해당 의원을 직접 대면 접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12월 9일 자 보도는 New South Wales 주 정부가 외곽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다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개발 사업과 관련한 최근 현황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기사는 기존의 지역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기존 사업주 중 한 명이 “그동안 자신의 사업을 방해해 온 지역의회가 이번 개발 사업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이 기사는 Pendleton 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Pendleton 의원은 지역의회에 대한 비난은 곧 의회의 구성원인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Pendleton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문사 측은 해당 기사는 신도시 개발 사업은 분명히 주 정부와 지역 개발부의 일이라고 밝힌 다른 기사와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이며, 기사에서 Blacktown 지방의회를 비난한 부분은 지방의회에 대한 한 개인 사업주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문사 측은 또

그동안 자신들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Blacktown 지방의회와 지역 사업계 사이의 문제를 보도해 온 것은 시민들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지역의회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APC는 기사가 지방의회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사 측이 당사자들의 발언이나 의견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 측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고 판단한다.

뉴질랜드 사례

균형성은 어떠한 주제와 관련, 대안이 되거나 반대가 되는 시각이 함께 보도 되지 않을 경우 사실의 왜곡이나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특별히 요구되는 언론의 가치이다. 그러나 균형성이 일반적 사안에 대한 모든 대안적 시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건번호 : 2109 TED MASON AGAINST THE NEW ZEALAND LISTENER

뉴질랜드 신문평의회(PC)는 2009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보도된 인공적 지구온난화 관련 일련의 기사들에 대해 Ted Mason이 제기한 불만을 기각했다. Ted Mason은 『New Zealand Listener』가 보도한 인공적 지구온난화 기사는 검증되지 않은 과학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반대 견해를 함께 게재하지 않은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PC는 기사의 내용이나 배경을 감안할 때 반대 시각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사내용

『New Zealand Listener』는 ‘지구온난화, 과학과 해

법 - 인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 아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회의를 몇 주 앞두고 지구온난화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일련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사들은 몇 주 후 열리게 되는 기후변화회의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함께 온난화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과학적 정보,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기후변화회의에 참가하는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신문은 이러한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및 그래픽과 함께 4개의 기사를 10페이지 넘게 게재하였다.

불만내용

Mason은 인공적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은 그 본질상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와 과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PC는 기타 출판물이나 다큐멘터리 등이 인공적 지구온난화 개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설득력 있고 신뢰할만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Mason의 주장처럼 이 기사가 모든 주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ason은 정부가 실제 인공적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었다면 분명히 ‘현실적이며 조직화된’ 조치를 이미 취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신뢰할만한 각국의 정부들이 인공적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함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Mason은 과학적 근거로 미국의 과학자 3만1,000명이 인공적 지구온난화 개념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왔으며, 『New Zealand Listener』는 Ian Wishart, Ian Plimmer, Lord Monckton, Richard Lindsen 교수와 같은 ‘저명하고 신뢰할만한 비평가들이 제시한 인공적 지구온난화 개념에 대한 비평 기사’를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의견

『New Zealand Listener』의 편집국장 Pamela Stirling은 자신들은 이미 인공적 지구온난화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비평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이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서명을 담고 있는 청원서에 관한 내용도 이미 지면에 실은 바 있다고 답변했다. 『New Zealand Listener』는 이미 같은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게재해 달라는 Mason의 주장을 거절한 바 있다.

이후 Mason은 『New Zealand Listener』 측에 인공적 지구온난화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실어 줄 것을 다시 요구했으나, Stirling은 특정 주제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하며, PC의 균형성 조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Mason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tirling은 기존의 사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인공적 지구온난화 개념에 대한 추가 기사를 실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잡지사 측의 답변

Pamela Stirling은 PC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잡지사 측은 임상 병리사로서 Mason의 경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두 번의 기고를 실은 적이 있지만, 이번과 같이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한 의견까지 지면에 게재할 경우 일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전해왔다. 또 Mason의 의견은 뉴질랜드 기후 과학연합의 농업 분야 대변인 Edmeades 박사의 주장(『New Zealand Listener』가 ‘인공적인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선동적인’ 기사를 보도를 했다는 것)과 핵심적인 내용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며, 『New Zealand Listener』는 이미 그러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기 때문에 Mason의 의견을 다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논 의

코펜하겐 기후회의와 지구온난화는 지난해 말 아주 중요한 이슈였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잡

지사 측에서 상당한 양의 지면을 할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Mason이 제기한 불만의 핵심은 인공적 지구온난화 개념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의 시각도 기사의 균형적 관점에서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PC는 출판물은 항상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의도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누락함으로써 독자들을 의도적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균형성은 어떠한 주제에 관해 대안이 되거나 반대되는 시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의 왜곡이나 부정확한 보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언론의 가치이다. 그러나 균형성이 기사와 직

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일반적 생각에 대한 모든 대안적 시각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New Zealand Listener』가 게재한 인공적 지구온난화의 개념 관련 기사에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었다면 기사가 더욱 풍부해졌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New Zealand Listener』가 11월 판에 비판적인 기고들과 의견을 게재했다는 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인공 지구온난화 개념에 대한 논의를 잡지 측이 잠재우려는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불만제기 내용을 기각한다. 